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제71호 2022. 11. 11(금)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827호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1828호 남원시 라·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남원시 조례 제1829호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 남원시 조례 제1830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7
- 남원시 조례 제1831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9
- 남원시 조례 제1832호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14
- 남원시 조례 제1833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26
- 남원시 조례 제1834호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31
- 남원시 조례 제1835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36
- 남원시 조례 제1836호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6

## 규 칙

- 남원시의회 규칙 제1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52

##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33호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54
- 남원시 훈령 제434호 남원시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규정-----76

##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52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95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154호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7
- 남원시 공고 제2022-2167호 도로지정 공고-----105
- 남원시 공고 제2022-2174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106
- 남원시 공고 제2022-2185호 도로지정 공고-----11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27 호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28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비보상) ①~② (생 략) ③ <신 설>	제7조(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 <u>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u> <u>을 지원할 수 있다.</u>

[별지 제1호서식]

##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
- 관련조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제3항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 전제: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
  - 남원시 이·통장 수: 502명
  - 통신요금 지원액: 1인당 30,000원
- 비용추계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180,720천원
  - ※ 산출근거: 502명(현원) × 30,000원 × 12개월 = 180,72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통신요금지원비	180,720	180,720	180,720	180,720	180,720	903,600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29 호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출향인”이라 함은 <u>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u></p> <p>2.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출향인”이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u></p> <p>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u>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u></p> <p>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u>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u></p> <p>2. 3.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0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월 8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하되 그 차액  
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수 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u>월 8만원</u> 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 ----- ----- <u>월 10만원</u>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1 호

###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설치신고 기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 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의 “제3조제1항”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
  2.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별표의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의 비고란 중 “18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기준) ①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u></p> <p>1. <u>건축 등의 부지는 등기부등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u></p> <p>2. <u>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u></p> <p>② <u>두레사랑방은 위 설치기준을 갖추고 마을 주민의 협력으로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경로당 중 선발을 통해 지원한다.</u></p>	<p>제3조(설치신고 기준) <u>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 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u>시장은 제3조제1항의 설치 지원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신축은 「남원시 리·통·반</u></p>	<p>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u>--- 제3조- -----</u>  <u>-----</u>  <u>-----.</u></p> <p>② <u>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u></p>

현 행	개 정 안
<p><u>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1개소만 지원할 수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회원이 읍·면지역은 10명 이상, 동 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u></p> <p>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li> <li>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li> <li>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이 편입된 경우</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li> </ol>	<p><u>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u></li> <li>2. <u>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u></li> </ol>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u>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u>				[별표] <u>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u>			
구 분	노인인 구수	연면적	비 고	구 분	노인인 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 0 0 제 곱 미 터 이하	- 제 곱 미 터 당 <u>180만원</u> 이내로 함	신축 및 재건축	(현행과 동일)		-
	25명 이상	8 5 제 곱 미 터 이하					----- --
	25명 미만	7 5 제 곱 미 터 이하					<u>250만원</u>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2 호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3항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남원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품질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

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전승 공예품
12. 남원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시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용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

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



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및 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3 호

###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나. 제8조에 따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4 호

###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의 콩·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콩·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콩·밀”이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



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콩·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콩·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콩·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콩·밀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콩·밀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콩·밀의 가공·유통사업자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콩·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콩·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
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콩·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4. 콩·밀 및 콩·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콩·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콩·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콩·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 유통단체 대표자

다. 콩·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위원장)과 부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위원회)의 회의(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위원회)의 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出席)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안건(案件)의 내용이 경미(輕微)한 경우 또는 긴급(緊急)한 사유(事由)로 위원(委員)이 출석(出席)하는 회의(會議)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餘裕)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書面)으로 심의(審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위원회)의 운영(運營) 등에 관하여 이 조례(條例)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事項)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運營)에 관한 조례(條例)」를 준용(準用)한다.

제12조(관계기관(關係機關)의 협조) 위원회(위원회)는 그 업무(業務)수행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때에는 관계기관(關係機關)의 직원(職員) 또는 전문가(專業家)의 의견(意見)을 듣거나 관계기관(關係機關) 또는 단체(團體)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意見)의 제출( 제출) 등 필요(必要)한 협조(協助)를 요청(要求)할 수 있다.

제13조(소비(消費)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公共機關), 기업체(企業體), 자생단체(自生團體) 등을 대상으로 콩·밀의

소비촉진을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시장은 콩·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밀과 콩·밀가루 또는 콩·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5 호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를 삭제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u>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u>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u>대해</u>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공동출입문의 보수·교체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u>1. 도로 보수</u></p> <p><u>2. 옥외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u></p> <p><u>3.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u></p>	<p>제3조(지원대상) ① -----</p> <p>-----</p> <p>-----</p> <p>-----</p> <p>----- <u>공동주택</u></p> <p>-----</p> <p>-----</p> <p>-----</p> <p>----- <u>대하여</u> -----</p> <p>-----</p> <p>----- <u>≤단서 삭제&gt;</u></p> <p><u>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u></p> <p><u>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u></p> <p><u>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u></p>

현 행	개 정 안
<p>4. <u>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보수</u></p> <p>5. 삭 제&lt;2021.7.2.&gt;</p> <p>6. <u>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설치 및 보수</u></p> <p>7. <u>지하주차장 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보수</u></p> <p>8. <u>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노후 담장정비 사업</u></p> <p>9. <u>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u></p> <p>10. <u>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u></p> <p>11. <u>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u></p> <p>12. 삭 제&lt;2021.7.2.&gt;</p> <p>13. <u>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의 설치·개선</u></p> <p>14. <u>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장면공개 시설장비의 설치</u></p> <p>15. <u>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u></p> <p>16. 삭 제&lt;2021.7.2.&gt;</p> <p>17. <u>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시설의 개수·보수</u></p>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지 보수 및 설치</u></p> <p>4. <u>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u></p> <p>5. (현행과 같음)</p> <p>6. &lt;삭 제&gt;</p> <p>7. &lt;삭 제&gt;</p> <p>8. &lt;삭 제&gt;</p> <p>9. &lt;삭 제&gt;</p> <p>10. &lt;삭 제&gt;</p> <p>11. &lt;삭 제&gt;</p> <p>12. (현행과 같음)</p> <p>13. &lt;삭 제&gt;</p> <p>14. &lt;삭 제&gt;</p> <p>15. &lt;삭 제&gt;</p> <p>16. (현행과 같음)</p> <p>17. &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24조(구성 등) ① <u>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u></p> <p>1. <u>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② <u>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u></p> <p>제24조(구성 등) <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p> <p>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p>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예외로 한다.</u></p> <p><u>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25조 삭제&lt;2015.9.25.&gt;</p> <p><u>제26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② 삭제 &lt;2017.12.27&gt;</u></p>	<p><u>&lt;삭 제&gt;</u></p> <p>(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별표 1]

##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정 량 평 가 (부 서 평 가) 7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li> <li>▪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li> <li>▪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li> <li>▪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li> </ul>	20 16 12 8
	②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li> <li>▪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li> <li>▪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li> <li>▪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li> <li>▪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li> </ul>	15 12 9 6 3
	③ 재난위험등급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등급 이상</li> <li>▪ C등급</li> <li>▪ B등급 이하</li> </ul>	15 10 5
	④ 단지규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세대 미만</li> <li>▪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li> <li>▪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li> <li>▪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li> <li>▪ 1,000세대 이상</li> </ul>	10 8 6 4 2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지원</li> <li>▪ 8년 이상 경과</li> <li>▪ 6년 경과 8년 미만</li> <li>▪ 4년 경과 6년 미만</li> <li>▪ 2년 경과 4년 미만</li> </ul>	10 8 6 4 2
정 성 평 가 (심 사 위 원) 30점	⑥ 긴급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li> </ul>	상 10 중 6 하 2
	⑦ 효과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li> </ul>	상 10 중 6 하 2
	⑧ 필요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 시설 여부 등</li> </ul>	상 10 중 6 하 2
<p>※기타 선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li> <li>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안전,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선정한다.</li> </ol>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범위의 상향
-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4조(지원방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2,400백만원 [※ 2023년도 전체 예산]
    - 연간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24개소
    - ※ 추계 산출 근거: 49개소(총 공동주택 단지) ÷ 2
    -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이하
    -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도						
총비용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전액 시비 편성

###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건축과장 양근식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 1836 호

###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을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  
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유상”을 “무상”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중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  
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러  
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등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p> <p>2. 3. (생략)</p> <p>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u>유상</u>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1조(무상공급)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p>1.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p>	<p>제2조(정의) ----- ----- ----.</p> <p>1. ----- ----- ----- <u>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u>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신청 및 공급) ① ----- ----- ----- <u>무상</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무상공급) &lt;삭 제&gt;</p> <p>1. ~ 3.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사용되는 경우</p> <p>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p> <p>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2조(대금납부) ① <u>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2조(대금납부) ① <u>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제8조 관련)

구 분	균 종 류	단 위	수수료	비 고
시 이외의 자	단일균	20 ℓ	15,000원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복합균,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	5 ℓ	5,000원	포장공급
		2 ℓ	2,500원	포장공급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원시의회 의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의회 규칙 제 1 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7일 전”을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u>7일 전</u> 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 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1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① ----- ----- <u>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훈령 제 433 호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 활동과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시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

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4. "규칙"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 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5.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6.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7. "재의요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제121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 시장이 시 의회에 이유를 붙여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을 말한다.
8.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작성, 의견조회 및 협의,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9. "입법안"이란 해당 사무의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 제2장 자치법규 등의 입안

### 제1절 입법사무의 원칙 및 심사기준 등

제3조(입안시 유의사항)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를 입안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모든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입법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등을 따른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3. 입법내용(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 법령 발췌내용
  6. 제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
  7. 비용추계서(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8. 입법예고 결과
  9.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승인사항(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② 소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에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

는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방침 결정문서
2. 참고 조례안 등(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참고 조례안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제5조(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①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등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등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 부서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1.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2.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 협의(예산상·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5.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변경 등 사전협의
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 등과 충돌 여부

제7조(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입법안 심사는 법무부서에서 담당하며,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에 따른 입안 적합성 여부
2.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3. 입법체계·형식·자구상의 문제 여부
  4.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충돌 여부
  5. 다른 시·도 입법례와의 비교·검토
  6. 그 밖에 입법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예비심사: 소관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무부서의 심사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는 단계
  2. 사전심사: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관부서의 의견 조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입법안을 법무업무담당이 심도있게 검토하는 단계
  3. 최종심사: 조례규칙심의회에의 심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법안을 법무업무담당이 종합 검토하는 단계
- ③ 최종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문서상단에 별표 1에 의한 심사필인을 찍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2절 입법사무 처리 절차

제8조(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2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방침결정 및 검토보고 (검토보고가 필요한 경우)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의

4. 사전심사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5. 기본방침결정 (시장 최종결재)
6. 입법예고
  - 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
  - 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실시
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장 발의에 한정함)
8. 조례안 확정
9. 시의회 제출
10. 시의회 심의·의결
11. 시의회 의결 조례안 법무부서로 이송(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 가. 법무부서는 이송된 조례안을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
  - 나. 소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의견을 3일 이내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에 한정함)
1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에 한정함)
13. 입법상황보고(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14.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15. 시보 게재 의뢰

제9조(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3의 순서에 따른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용
2. 입법상황보고(공포 예정 15일 전까지)
3. 규칙안 공포 및 시보 게재 의뢰

제10조(행정규칙안의 입안) 행정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용
-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가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 3 훈령·예규안의 확정(시장 결재)
4. 소관부서는 법무부서에 발령 의뢰
5. 행정규칙안 발령 및 시보 게재

### 제3절 조례규칙심의회

제11조(조례·규칙심의회 설치·운영)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 제4절 입법상황보고

제12조(자치법규의 입법상황보고) 법무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상황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절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제소

제13조(재의요구 절차 등) ① 소관부서는 제8조제11호나목에 따라 재의요구 의견

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의견통보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서의 심사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의요구안은 시장의 방침 결재를 받고,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심의 의뢰를 해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결정을 한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기한을 엄수하여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대법원 제소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면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의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시장의 방침 결정을 받아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제소장을 작성한 후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114조에 따라 시 조례안의 재의 및 제소 결과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소에 따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따른다.

### 제6절 입법안 공포 및 발령

제15조(공포문의 작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8조, 제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공포문 전문

## 2. 공포문

② 제1항제1호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6조(공포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 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한 후 시보 발간 담당부서에 시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시보 게재를 의뢰 받은 시보 발간 담당부서장은 시보에 공포문을 게재한다.

②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안이 심의회를 거쳐 공포하기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심의회가 재의요구를 결정한 조례안 및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이 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의견을 토대로 심의회에 공포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경우 제12조, 제15조,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발령 등) ① 훈령·예규의 발령은 법무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발령문 전문에는 행정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에게 발령을 의뢰해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발령을 의뢰받은 법무부서의 장은 발령문 전문에 누년 일련번호로 별지 제6호서식의 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발령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서의 장은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훈령·예규를 시보 발간 담당 부서에 시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시보 게재를 의뢰받은 시보 발간 담당 부서장은 시보에 발령문을 게재한다.

제18조(자치법규 등 관리) 법무부서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자치법규등을 공포·발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소관부서 점검 등)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한 후 오류가 있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 제3장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에 관한 처리 절차

제20조(의견제출 처리 등) ①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제출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이 법 제20조제2항의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해야 한다.

제21조(검토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취지와 이유의 적정성, 근거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과 관련한 그 밖의사항은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장 자치법규 등의 정비 및 관리

제22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 등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 및 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입법)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법령등 질의·회신 및 중요문서 심사

제25조(질의방법)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쟁점이 되는 해당 법령 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갑설, 을설로 구분)
4.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등

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보충설명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질의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거나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던 경우
3.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5.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7조(중요문서의 심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이하 “중요문서”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문서
2. 행정처분에 관한 문서
3. 훈령·예규문서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따라 중요문서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제7조의 입법안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1. 소관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문서
  - 2. 반복적이며 정형화된 행정처분으로서 특별히 심사를 요하지 않는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 3. 토목·건축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문서
-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소관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요청 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법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해당 중요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지침의 폐지) 「남원시 중요성안문서 심사 규정」, 「법령질의 요령」은 폐지한다.

[별표 1]

법무업무담당 심사필 (제7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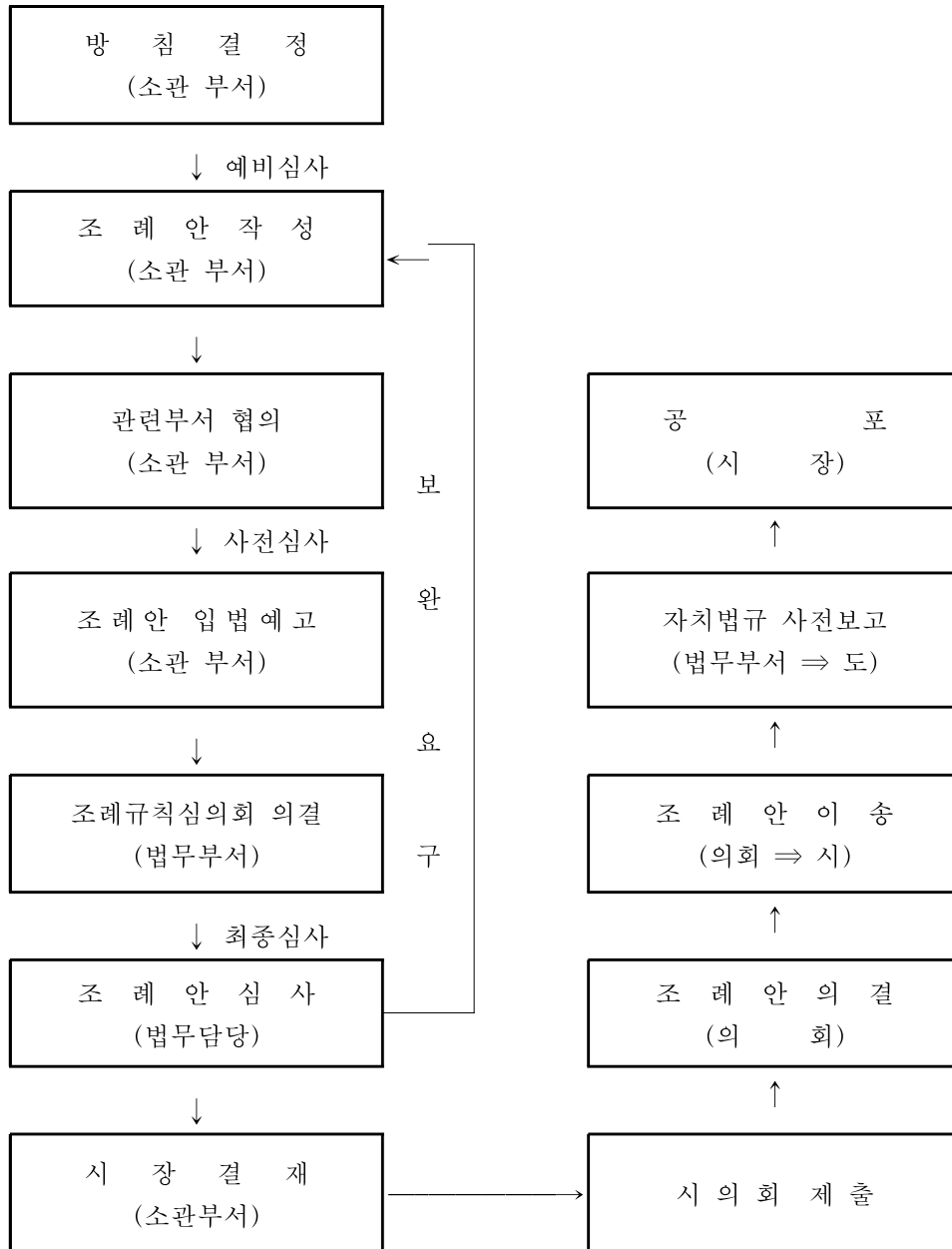
심사필	년    월    일
	법무업무담당 (인)

6cm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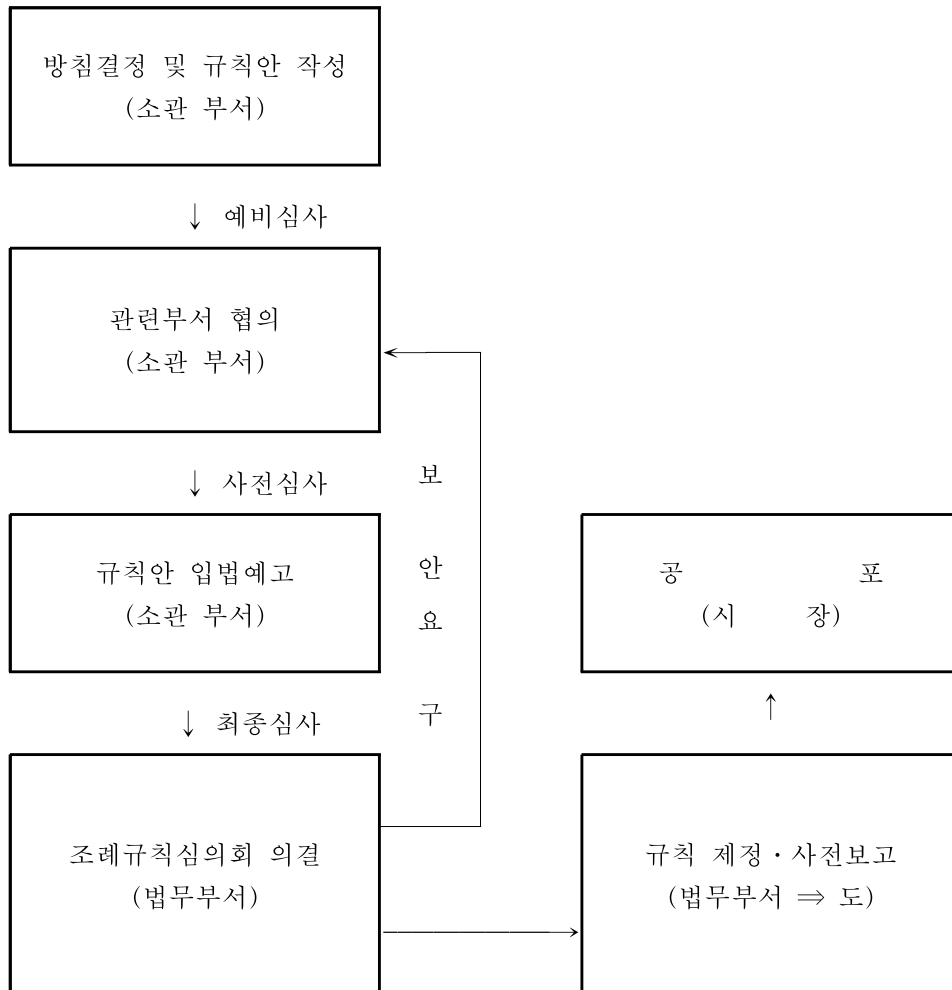
[별표 2]

조례의 처리절차 (제8조관련)



[별표 3]

## 규칙의 처리절차 (제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법제심사 대장 (제7조관련)

일련 번호	심사 완료일	건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별지 제2호서식]

## 조례(규칙)입법상황 보고서 (제12조관련)

□ 조례·규칙명 :

제안자	시장( ), 국회의원( ),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 년 월 일)		
의회 의결일	년 월 일	이송일	년 월 일
공포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재의요구기한	년 월 일
근거법령	「 법」 제 조		
소관부서	○○○과		
도소관부서	○○○과		
제정·개폐사유	○		
주요내용	○ (안 제○조) ○ (안 제○조) ○ (안 제○조)		
지자체 검토의견	○		
중앙부처 질의	○		
언론보도 등 동향	○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조례(제정·개정·폐지)안 재의요구(제13조관련)

의안번호	
------	--

제출연월일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실과장

년 월 일 남원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남원시 ○○조례(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 내 용 ]

1. -----은 ○○○법에 위배

- \_\_\_\_\_  
\_\_\_\_\_
- \_\_\_\_\_  
\_\_\_\_\_

2. -----은 ○○○법에 위배

- \_\_\_\_\_  
\_\_\_\_\_
- \_\_\_\_\_  
\_\_\_\_\_

붙임 : 남원시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 조례 재의요구 사항보고 (제14조관련)

조례명			
종류	제정(    ),	개정(    ),	폐지(    )
제안자	시장(    ), 의원(    )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    년 월 일)		
의회의결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재의요구지시여부	주무부장관(    ), 도지사(    )		
재의요구일			
재의결일			
문제규정			
재의요구사유			
비고			

[별지 제5호서식]

## 조례 제소사항 보고 (제14조관련)

조례명			
종류	제정( ),	개정( ),	폐지( )
제안자	시장( ), 의원( )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 년 월 일)		
의회의결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재의요구지시여부	주무부장관( ), 도지사( )		
재 의 요 구 일			
재 의 결 일			
제소지시여부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판 결 일			
제 소 일			
판 결 요 지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 조례·규칙(훈령·예규) 공포(발령)대장 (제16조, 제17조관련)

공포(발령) 번호	공포(발령) 연월일	건명	주요내용	소관 부서	시보 게재일

「남원시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1월 11일

남원시 훈령 제 434 호

**남원시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원시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1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기계·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시행기준 및 수칙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 또는 현장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

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남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위원: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5명 이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보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직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진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15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 결과에 대하여 게시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등)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자와 협의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7조(교육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제18조(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19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20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게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작업배치 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
-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특별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은 법 규칙 별표 5와 같다.

제22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3조(교육기록)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서명부 등)
-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5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해당 기계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6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7.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서류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 적정 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법 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법 규칙 별표 7과 같다.

제30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작업안전수칙을 작성·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제31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차량안전운행)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 안전점검 및 운전원안전 교육 등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3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4조(작업환경측정) 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제35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 간 보존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사무직의경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야간근무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취급 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38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상담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폭언 등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등을 하는 경우 법률자문, 증거제출 협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산재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안전 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사고발생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4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발생한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검토는 재해발생과정 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대책수립 순으로 실시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 제7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45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건설물·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무재해운동)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47조(문서보존연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8조(변경절차) ①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 이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시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시 제2022-152호

##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인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시설 곡선형짚와이어 확충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1월 11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시설 곡선형짚와이어 확충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632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라북도교육감
  -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359,508	632					
1	운봉	공안	산45	임	359,308	632	전라북도 (교육감)				

남원시공고 제2022 -2154호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으로 인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경로우대 및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단서 신설 (안 제3조제2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나. 지원금액 명시한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호)

3. 입법예고기간 : 2022. 11. 03. ~ 2022. 11. 23.(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psyke1024@korea.kr), 전화(063-620-6637),  
FAX(063-620-6769) 및 직접방문 등

####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노인장애인과(☎063-620-6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노인장애인과장

## 1. 개정이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으로 인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경로우대 및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단서 신설 (안 제3조제2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나. 지원금액 명시한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 ~ 2022.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원대상자”를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목욕 및 이·미용권은 <u>지원 대상자</u>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lt;후단 신설&gt;</p> <p>3. <u>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u>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u>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u> 본인이 부담한다.</p>	<p>제3조(지원기준)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u> 이 <u>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자</u> -----</p> <p>----. <u>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2167호

##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지 위치	건축주 성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40	남원시 신촌동 316-2(전)	정*남	2022-건축과- 건축신고-260	230	3	996	439-8	0.8	국(농수산부)
							50-1	7.6	전라북도
							50	1	오용섭
							37	1.7	정금순
							317	13.7	문하성
							48-3	27.2	이은미
							316-2	0.5	정복남
							36-1	7	전라북도
							439	125.3	국(농림축산식품부)
							319-1	8.1	김영자
							439-5	5	국(농수산부)
							439-6	477.6	국(농수산부)
							439-7	6.3	국(농수산부)
							49	212.4	강대규
							38	2.5	정귀자
44-2	49	남원시							
43-1	34.4	남원시							
43-2	15.9	남원시							

## 남원시 공고 제2022 - 2174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 현행: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변경: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결과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7조)

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담당

#####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44)  
이메일(hls61001@korea.kr)

####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여성가족과장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 현행: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변경: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결과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7조)

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 ~ 2022. 12.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가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평가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 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사업의 추진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남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



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소관 국장

2.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호에서 인용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각각 개정한다.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붙임

## 관련 법령

##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2185호

##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sup>2</sup>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sup>2</sup> )	토지소유자
2022-41	남원시 화정동 261(잡종지)	이*현	2022-건축과- 신축신고-141	139	4	519	767	52.1	국(건설부)
							225	80	임경열
							225-1	4.5	남원시
							770-2	60	국(건설부)
							225-2	33	임경열
							769-17	235.4	국(농림축산식품부)
							769-17	21	국(농림축산식품부)
							1032	5	국(농림축산식품부)
767	28	국(건설부)							